

2020년도 한국운동역학회 제33회 정기총회

■ 일 시 : 2020. 12. 18(금) 17:30

■ 장 소 : 한림대학교 고령사회교육센터 국제회의실



한국운동역학회

Korean Society of Sport Biomechanics

제33회 정기총회 회순

의장 : 회 장 곽 창 수

사회 : 총무이사 박 재 범

- 성원보고
- 국민의례
- 개회사
- 전차 회의록 접수
- 안전심의
- 폐회

차 례

전차 회의록 접수	3
2020년도 감사보고	6
2019년도 사업 실적 보고	8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1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17
임원 선출	19
회장 이·취임	21
연구 윤 리 지 침	22
정 관	26
별 첨	35

전차 회의록 접수

제 32회 정기총회 회의록

한국운동역학회 2019년 31회 정기총회는 2019년 12월 6일(금) 오후 5시 30분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열렸다.

(사회) 한국운동역학회 박재범 총무이사(이하 총무이사로 지칭)가 제 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사회를 진행하였다.

(개회사)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한국운동역학회 회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성원보고) 총무이사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함으로써 한국운동역학회 2019년 제 32회 정기총회가 성원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안전심의)

1. 감사보고

감사는 2019년 감사보고서를 낭독하였다. 회장이 이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자 참석회원 전원이 동의하고 제청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2. 2019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총무이사는 2019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상정하였다. 회장이 이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자 참석회원 전원이 동의하고 제청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3. 2019년 사업(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총무이사는 2019년 사업(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였다. 회장이 이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자 참석회원 전원이 동의하고 제청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4. 2019년 한국운동역학회 감사 선출

임기가 만료된 감사 김영관의 후임으로 유경석 이사가 선출되었다. 회장이 이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자 참석회원 전원이 동의하고 제청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5. 회장 선출 및 차기 학회 운영 관련

제 17대 한국운동역학회 회장으로 이기광 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회장은 차기 회장의 학회 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폐회) 이어 회장은 “2019년 제 32회 정기총회”의 폐회를 선언하였다.

2019년 12월 6일

회의록 작성자 김기태

의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총무이사 박재범

2020년도 감사보고

감 사 필 증

한국운동역학회 정관 제 4장 12조 4항에 의거 하여
2020년도 학회 사업 및 재정 감사 결과 장부 및 증빙
서류가 이상 없음을 확인함.

2020년 12월 15일

한국운동역학회

감사 은선덕 (인) 

감사 유경석 (인) 

2020년도 사업 실적 보고

1. 한국운동역학회 사업(학술대회 참여)

【 제58회 한국체육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참여 】

- 일 시 : 2020년 10월 22일~23일
- 장 소 : 온라인
- 주 제 : 한국체육학 75년 한국체육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 주 최 : 한국체육학회
- 참여학회 : 한국체육사학회, 한국체육철학회, 한국특수체육학회,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한국무용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 한국운동영양학회, **한국운동역학회**, 한국발육발달학회,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제58회 한국체육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2. 한국운동역학회지 발간사업

【 한국운동역학회지 제30권 1호지(KJSB, Vol.30, No.1) 】

- 투고마감 : 수시
- 발 행 일 : 2020년 3월 31일
- 게재논문 : 13편

【 한국운동역학회지 제30권 2호지(KJSB, Vol.30, No.2) 】

- 투고마감 : 수시
- 발 행 일 : 2020년 6월 30일
- 게재논문 : 5편

【 한국운동역학회지 제30권 3호지(KJSB, Vol.30, No.3) 】

- 투고마감 : 수시
- 발 행 일 : 2020년 9월 30일
- 게재논문 : 9편

【 한국운동역학회지 제30권 4호지(KJSB, Vol.30, No.4) 】

- 투고마감 : 수시
- 발 행 일 : 2020년 12월 31일
- 게재논문 : 게재 확정 3편, 심사중 5편

3. 2020년 한국운동역학회 주요 회의

【 2020 제 1차 상임이사회 】

- 일 시 : 2020년 1월 13일(월) 17:30
- 장 소 : 수서역 서래향
- 안 건 : 주요 사업계획 및 학회지 발간 일정 공유, 학회 임원 구성 논의 등
- 회의내용 : -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사업 관련 논의
- 스포츠태권도 국제 융합 컨퍼런스 등 공동개최 행사 관련 논의
- 주요 국제학술대회 참가 관련 논의

【 2020 제 2차 상임이사회 】

- 일 시 : 2020년 9월 29일(화) 18:00
- 장 소 : 수서역 서래향
- 안 건 : 학회 주요 사업 및 체육학회 협력사업 관련 논의
- 회의내용: - 한국체육학회 협력사업 및 운동역학회 학술대회 관련 논의
- 2020 운동역학회 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병행 관련 논의
- 학회 이전 절차 및 차기 임원 선출방법 관련 논의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1. 2020 한국운동역학회 세입·세출 총괄표

2019년 이월금액	39,204,285 원
------------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단위: 원)

항목	세입	세출	잔액
2019년 이월금액	39,204,285	-	-
2020년 세입총액	36,333,767	-	-
2020년 세출총액	-	32,644,145	-
합 계	75,538,052	32,644,145	42,893,907
2019년 잔액	42,893,907 (+3,689,622)		

2. 세입·세출 세부내용 (2020년 11월 30일 기준)

세입		세출	
항목	금액 (원) (전년 금액)	항목	금액 (원)
회비	가입비 & 유료회비 11,326,640 임원회비 (11,578,150)	인건비 (사무국, 편집국)	16,500,000
학회지	계재료 6,876,800 (6,386,800)	학회지 편집비 (DB 구축, 디자인, 시스템 유지보수 등)	11,862,800
	한국학술정보 인세 2,983,726 (4,210,309)	경조사(화환 등)	600,000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학술대회 지원사업) 9,200,000	번역료(18년도 미납분)	1,916,063
	한림대학교 지원금 (국제학술대회 지원사업) 5,000,000	회의비(1, 2차 상임이사회)	555,000
행사	운동역학회 학술대회 등록 830,000	환불(가입비 중복납부, 등록 철회 등)	160,000
	체육학회 등록 99,680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등록비용 100,000	
	이자 16,921	통신요금	
합 계	36,333,767	수수료 및 기타 KJSB 도메인 연장 통신 수수료 은행 이체 수수료	950,282
		합 계	32,644,145

*추가 세입 세출 예정

- 세입 : 학술대회 추가 등록비용, 기업후원, 계재료 등
- 세출 : 학회지 29권 4호지 편집비용, 학회 진행비용 등

2021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1. 2021년도 한국운동역학회 주요 사업

【 2021년 한국운동역학회 동계 워크숍 】

- 일 시 : 2021년 2월 (예정)
- 장 소 : 미정

【 2021년 한국운동역학회 춘계 학술세미나 】

- 일 시 : 2021년 5월 (예정)
- 장 소 : 미정

【 2021년 한국운동역학회 국제학술대회 】

- 일 시 : 2021년 12월 (예정)
- 장 소 : 미정

2. 한국체육학회 협력 사업

【 2021년 한국스포츠과학자 통합학술대회 】

- 일 시 : 2021년 6월
- 장 소 : 미정

【 제 31회 88서울올림픽기념 국제스포츠과학 학술대회 】

- 일 시 : 2021년 8월
- 장 소 : 미정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기념 제60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

- 일 시 : 2021년 10월
- 장 소 : 미정

3. 한국운동역학회지 발간 사업

【 한국운동역학회지 제31권 1호지(KJSB, Vol.30, No.1) 】

- 투고마감 : 수시
- 발 행 일 : 2021년 3월 31일
- 게재논문 : 10편

【 한국운동역학회지 제31권 2호지(KJSB, Vol.30, No.2) 】

- 투고마감 : 수시
- 발 행 일 : 2021년 6월 30일
- 게재논문 : 10편

【 한국운동역학회지 제31권 3호지(KJSB, Vol.30, No.3) 】

- 투고마감 : 수시
- 발 행 일 : 2021년 9월 30일
- 게재논문 : 10편

【 한국운동역학회지 제31권 4호지(KJSB, Vol.30, No.4) 】

- 투고마감 : 수시
- 발 행 일 : 2021년 12월 31일
- 게재논문 : 10편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1.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안)

2020년 잔액	42,893,907
----------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원)

항목	세입	세출	잔액
이월금액	42,893,907	-	-
세입총액	46,050,000	-	-
세출총액	-	42,850,000	-
합 계	88,943,907	42,850,000	46,093,907

2. 세입·세출 예산(안)

세 입		금 액
항 목		
회비	가입비 & 유료회비	16,000,000
	임원회비	
학회지	게재료	12,000,000
	한국학술정보 지원금	5,000,000
동계워크숍 및 춘계학술세미나		3,000,000
국제학술대회	등록비	4,500,000
	후원금	5,500,000
예금이자		50,000
합	계	46,050,000

세 출		금 액
항 목		
사무국	사무비	1,800,000
	인건비	18,000,000
운영비	통신비	1,600,000
	교통비	150,000
학회지	전자저널	10,000,000
상임이사회		1,000,000
동계워크숍 및 춘계학술세미나		2,500,000
체육학회 지원사업 추가지출		2,000,000
2018 한국운동역학회 국제학술대회		2,500,000
경조사비		1,500,000
회의비		1,800,000
합	계	42,850,000

임원 선출



□ 감사선출

- 임기가 만료된 감사 은선덕의 후임 감사 선출.



회장 이·취임

연구윤리지침



한국운동역학회지 연구윤리지침

2007년 4월 28일 제정

2012년 9월 15일 개정

연구윤리지침

이 지침은 한국운동역학회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연구윤리 지침

제1조 연구자의 윤리 지침

1.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 대상이 실험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자는 모든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 및 정확성의 기본 원칙을 추구하고, 날조, 변조, 표절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4.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 1)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모든 연구논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장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fabrication)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falsification) :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plagiarism)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출판(multiple publication) 및 이중게재(redundant publication) : 중복출판이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이며, 같은 내용이란 재료(또는 대상)의 50% 이상과 방법이 같은 것을 말함. 이중게재는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원저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는 행위임
이차 게재와는 구분하여야 함

<참고>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다음 요건을 갖추어 두 개 이상의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다.

- 1)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 문서로 동의하고 이차 학술지 편집인이 일차 학술지 논문을 보아야함
- 2)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 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해야 함
- 3) 내용과 결론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 논문은 가급적 축약본으로 함
- 4)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1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 5) 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하여야 함

제 2장 연구윤리 시행 지침

제1조 연구윤리 지침 서약

투고자의 연구윤리 지침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1. 『한국운동역학회』지의 기존 회원은 윤리 지침의 발효 시 본 윤리 지침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한국운동역학회』지의 논문투고 시에 “전반적인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전혀 없음”이라는 협약서를 받는다.

제2조 윤리 지침 위반 보고

1. 논문심사위원을 비롯한 『한국운동역학회』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지침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 지침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백한 윤리 지침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임시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5. 위원회의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3.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1. 윤리 지침 위반으로 보고 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윤리 지침 위반이 된다.
2. 윤리 지침 위반으로 보고 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윤리 지침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윤리 지침 위반에 대한 징계

1. 윤리위원회는 윤리 지침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징계 결과는 출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운동역학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윤리 지침 위반 회원에 대한 제재 지침은 윤리위원회 내규에 별도로 둔다.

<윤리 지침 위반 회원에 대한 제재 지침>

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로 『한국운동역학회』 윤리 지침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윤리 지침을 1회 위반한 경우
 - 1) 경고 공문발송
 - 2) 『한국운동역학회』 지에 한시적인 투고 금지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
2. 연구 윤리 지침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1) 『한국운동역학회』 지에 영구적인 투고 금지
 - 2) 관계기관 고발

정 관



1차 개정 2017. 1. 25.

정 관

사단법인 한국운동역학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운동역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한국 운동역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맞는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법인은 스포츠와 과학이 융합된 시대를 대비하여 운동역학 분야의 연구 개발과 교육사업 및 각종자격을 발급·관리를 통하여 직업수행 능력의 개발을 촉진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운동역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학술대회의 개최
2. 운동역학과 관련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를 위한 대외교류
3. 지식 공유를 위한 운동역학회지 및 도서의 발간사업
4. 운동역학의 전문성을 지닌 공인된 인재양성을 위한 자격사업
5. 학술 연구 및 현장 연구의 지원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8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상벌)

-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전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6인(회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1인

제11조(임원의선임)

-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상임이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 산 과 회 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8조(사무국)

-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20. 12. 15.

위 사본함.

사단법인 한국운동역학회

별첨



한국운동역학회 고문

역대회장	성명	소속
초대	박성순	국민대학교
제2대	양동영	전남대학교
제4대	신보삼	전북대학교
제5대	윤희중	한국체육대학교
제6대	황인승	연세대학교
제7대	서국웅	부산대학교
제8대	정철정	성균관대학교
제9대	김의환	용인대학교
제10대	신인식	서울대학교
제11대	박종진	경성대학교
제12대	배영상	계명대학교
제13대	류지선	한국체육대학교
제14대	소재무	건국대학교
제15대	이경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운동역학회 회장단

직 위	성 명	소 속
명예회장	이경옥	이화여자대학교
회 장	곽창수	한림대학교
부회장	배성제	춘천교육대학교
	김갑선	목포대학교
	김승재	한서대학교
	김옥자	신한대학교
	김창국	고려대학교
	김헌수	대전대학교
	김혜영	한국체육대학교
	노효련	강원대학교
	류재청	제주대학교
	박 진	서울여자대학교
	박금숙	중원대학교
	박종훈	가톨릭관동대학교
	백송원	부산외대
	백진호	강원대학교
	서국은	부산대학교
	신제민	상명대학교
오성근	한국체육대학교	
오정환	충남대학교	



직 위	성 명	소 속
	우상연	순천향대학교
	유 실	한양여자대학교
	윤창선	한국체육대학교
	이경일	조선대학교
	이기광	국민대학교
	이기청	춘천교육대학교
	이동우	광주교육대학교
	이성철	연세대학교
	이연종	세명대학교
	이종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중숙	신라대학교
	임규찬	울산대학교
	임영태	건국대학교
	조규권	강릉대학교
	진영완	동의대학교
	최규정	스포츠정책과학원
	최지영	연세대학교
	탁계래	건국대학교
	하철수	상지대학교
	김규완	인천대학교



한국운동역학회 상임이사

직 위	성 명	소 속
총무이사	박재범	서울대학교
	강년주	인천대학교
국제이사	데이빗	부산대학교
	김용운	경남대학교
기획이사	염창홍	동아대학교
	박양선	한국교통대학교
윤리이사	윤석훈	한국체육대학교
	문영진	충남대학교
교육이사	박상균	한국체육대학교
	김태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학술이사	이해동	연세대학교
	안주은	서울대학교
사업이사	이세용	연세대학교
	박종철	부경대학교
정보이사	윤태진	강원대학교
	김석원	전북대학교



한국운동역학회 감사

직 위	성 명	소 속
감 사	은선덕	국립재활원
감 사	유경석	한남대학교



한국운동역학회 이사 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이사	강영택	부산대학교
	고영철	연세대학교
	고지현	한양대학교
	공세진	국민대학교
	구승범	카이스트
	권대규	전북대학교
	권문석	용인대학교
	권보영	이화여자대학교
	금명숙	명지대학교
	김도형	조선대학교
	김로빈	한성대학교
	김성주	에이스
	김연정	가톨릭대학교
	김용석	건국대학교
	김우섭	보훈병원
	김육한	태왕공영대표
	김유신	중원대학교
	김재구	동원대학교
	김재정	건국대학교
	김정태	창원대학교



직 위	성 명	소 속
	김진현	국민대학교
	김채은	건국대학교
	김태삼	한국체육대학교
	문곤성	연세대학교
	문제헌	한국스포츠정책연구원
	문훈기	나누리병원
	박범영	한양대학교
	박은경	서울아산병원
	박재영	동의대학교
	박태민	국군체육부대
	박태진	부산대학교
	박해수	동서대학교
	변호진	중흥고등학교
	서육현	한국체육대학교
	석상훈	키네스
	손지훈	전주대학교
	신준용	충북대학교
	신충수	서강대학교
	여홍철	경희대학교
	우병훈	경기대학교
	은선덕	국립재활원



직 위	성 명	소 속
	이영선	한국체육대학교
	이재훈	나사렛대학교
	이진택	대구교육대학교
	이효택	부경대학교
	이훈표	대한볼링협회
	인희교	한양대학교
	장은욱	인천대학교
	장재관	경희대학교
	장재익	계명문화대학
	전민주	한림성심대학교
	전형필	동아대학교
	정남주	호남대학교
	정재욱	주) 링크리아
	조준행	한성대학교
	조필환	광주교육대학교
	최정규	중부대학교
	최치선	육군사관학교
	하종규	아주대학교
	황인섭	폴턴